

- 국민건강보험증과 국민연금수첩 (가입자)

○일본인

- 혼인신고 · 호적초본 · 인감
- 국민연금수첩 및 국민건강보험증 (가입자)

②출생신고

◎신고에 필요한 것

- 아이가 태어나면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받아, 출생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신고를 해 주십시오.
- 모자수첩 · 국민건강보험증 (가입자)
- 일본에서 태어난 아이가 외국의 국적인 경우에는 60 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 신청 수속을 해 주십시오. 또한, 60 일 이상 일본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으로서의 재류허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 재류 허가의 신청은 아래의 입국관리국에 문의해 주십시오.
도쿄입국관리국 코후 출장소
코후시 마루노우치 2 초메 14-13 다이타빌딩 2 층
전화 221-0206

③사망신고

◎신고에 필요한 것

- 사망신고 (의사의 사망진단서가 기재된 것)는 사망한 것을 안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 신고인의 인감 (원칙적으로 동거의 친족)
- 국민건강보험증 (가입자), 인감등록증 (등록자)
- 사망자의 외국인등록증명서
시청시민생활부시민과 호적계
전화 237-1161 내선 3310 · 3311

④장례식장의 사용에 대해서

화장이나 식장의 이용을 희망하는 분은 사망신고를 제출할 때에 신청해 주십시오.
· 화장 요금, 식장 이용료는 유료로 되어있습니다.
또는, 영구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도 유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복지부 건강위생과 예방위생계 전화 (대) 237-2505 에 문의해 주십시오.



(4) 국민건강보험

①국민건강보험의 가입과 보험증의 발행

코후시에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고, 1 년 이상 체재할 예정으로 직장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은 모두 국민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만 합니다. 가입자에게는 보험증이 발행됩니다.

보험증은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가입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로서, 병원을 이용할 때 필요하므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가족 이외의 사람에게 절대로 건네주어서는 안됩니다.

②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의료기관의 창구에 보험증을 제시하면, 일부 부담금을 지불하는 것만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부담금이 고액이 되었을 때에는 신청에 의해 고액요양비가 지급됩니다.

출산했을 때 출산육아 일시금, 사망했을 때 상제비가 지급됩니다. 교통사고 등으로 상처를 입어, 국민건강보험으로 진찰했을 때에는 곧바로 신고해 주십시오.

일하는 동안 입게 된 부상 등에는 국민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없는 진료도 있습니다.

③국민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수속을 하면, 수속한 다음달에 국민건강보험료의 청구서가 시청으로부터 보내져 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가입자나 그 가족의 전년도 수입이나 가족의 인원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시청이 가입자의 치료비를 병원에 지불하기 위한 비용의 재원이 되므로, 반드시 지불하셔야만 합니다. 시내의 금융기관 창구에서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납부해 주십시오.

④보험증의 반환

출국이나 코후시로부터 다른 시읍면으로 주소가 바뀔 때에는 보험증을 시청에 반환합니다. 또한, 시내에서 주소가 바뀌었거나, 가족의 일부에 이동이 있었을 때에는 시청에 신고해 주십시오.

⑤기타

수속장소 시청 본청사 1 호관 1 층 국민연금과

- 필요한 것……외국인등록증명서, 여권

국민건강보험제도 이외에, 회사나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사회보험제도가 있습니다. 가입하는 경우의 수속이나 보험료 납부 등은 사업주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장소에 문의해 주십시오.

시청시민생활부 국민연금과

전화 237-1161 내선 3318~20